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6729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23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민호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2.04.13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3. 17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류태규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0.06.18.	100,000,000		2020.06.19.	2020.05.25.		
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0.06.18.~ 2022.06.17.	100,000,000		2020.06.19.	2020.05.25.	2024.12.13.	
<p><비고></p> <p>류태규 :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.08.11.임. 경매신청채권자이며, 배당요구일자는 경매신청일임.</p>										
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							
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4번 임차권등기(2023.08.11. 등기) 있음.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.</p>										
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6729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0-10

대원하이츠빌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861번길 26-16

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평 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

지층 104.64㎡ 주차장

지층 9.36㎡ 계단실

1층 98.34㎡ 다세대주택

2층 98.34㎡ 다세대주택

3층 98.34㎡ 다세대주택

4층 87.14㎡ 다세대주택

옥탑 9.36㎡ 계단실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1호

철근콘크리트조 34.6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0-10

대 165.5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165.5분의 16.63

감정평가액

123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13

123,000,000

12,300,000

2회

2026.02.26

86,100,000

8,610,000

3회

2026.04.09

60,270,000

6,027,000

4회

2026.05.12

42,189,000

4,218,900